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안내

글/고 광 석(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과)

I. 서언

지난 1990년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해로서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에 매우 의미가 큰 시점이었다.

과거 1,2차 석유과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소비절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86년부터는 저유가 시대에 따른 3저 현상에 힘입어 국가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에너지소비도 크게 늘어 1989년부터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에너지소비 증가추세는 가속화 되었다.

이와같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속에서도 국가의 에너지공급구조가 비교적 안정적 상태에서 지속되어 오다 지난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걸프사태는 OPEC의 평균 유가를 7월의 배럴당 15달러선에서 10월에는 배럴당 33달러선으로 치솟게 하였으며, 난방용 등유의 부족으로 비축분을 방출하고 또다시 수입하여야 하는 일시적인 유통과동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정부에서는 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 1, 2단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절약시책을 적극 호응하고 모든 불편을 감내한 결과 에너지소비 증가가 잠시 한풀 꺾이는 듯 하였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걸프사태가 조기에 해결됨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 안정되고 국민들의 에너지소비가 또다시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 첫단계로서 1990년에는 우선 산업부문의 119개 에너지다소비 업체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여 약 14.2%의 에너지절약요인을 도출, 시설투자를 유도 하였으며, 또한 건물부문에서 대형 및 공공건물 131개소에 대해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 약 8.5%의 절감 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나아가서 금년도를 『에너지절약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90년대 중반으로 예측 되는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절약시책의 추진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5천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신설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건물, 산업체 등 에너지소비처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제3자(절약기업)가 시설 등 자본투자를 하고 그것의 운영·관리·유지까지 함으로써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얻는 기업을 말하는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 건물관리전문회사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의 업체들이 일부 존재하

고 있으나 아직은 그 기능범위가 좁고 절약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던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12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금융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관리에 전문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절약의지로써 미국, 캐나다, 유럽 일부 선진국가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이 제도를 도입·실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II.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하 “절약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약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절약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절약기업이라 함은 제3자(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본업으로 하며 기타 제9조에서 정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2장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투자사업이라 함은 절약기업이 제3자(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투자하고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액으로 투자·운영비 및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겸업회사라 함은 절약기업을 회사업무의 일부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4.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2장 절약기업의 등록

제4조(등록기준) 절약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등록신청 등) ① 절약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하 같다)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3.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4.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 제5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요령은 별표2와 같다.

1. 회사현황
2. 사업개요
3. 에너지절약 세부사업계획(최초 3개년간)
4. 인력고용계획
5. 사업추진계획(최초 3개년간)
6. 추정 재무제표
7. 기타

③ 절약기업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구비서류는 변경된 사항에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한다.

제6조(등록증 교부)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절약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하되 재교부 신청사유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8조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인 경우
3.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4. 신청인이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제8조(등록기준의 유지 등) ① 절약기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약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과 임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동

제3장 절약기업의 사업수행

제9조(사업의 범위) 절약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사업
4.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5.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6.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7.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사업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절약기업이 제9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 운용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수탁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2. 계약일 및 계약사업 수행기간
3. 에너지절약량(액) 산정방법 및 배분방법(사업수행여건 변동시의 조정내용 포함)
4. 투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절약기업은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계약사업 수행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수행상 의무) ① 절약기업이 본 운용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 범위내에서 지불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수행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계측을 위한 장치를 가능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약기업이 제1항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하며 그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절약기업은 제10조 제1항의 체결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장 절약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자금지원계획 수립) ① 동력자원부 장관은 절약기업이 제9조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절약기업은 제1항의 자금지원계획 수립을 위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익년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지원 조건) ① 절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자비율

가. 절약기업이 제9조의 사업만을 수행하는 자인 경우 : 소요자금의 90% 이내

나. 절약기업이 제9조의 사업이외의 사업도 수행하는 겸업회사인 경우 : 소요자금의 80% 이내

다. 절약기업이 동일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 소요자금의 70% 이내

2. 금 리 : 년리 5% 이내

3.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내

4. 용자한도 : 동일 사업당 50억원이내

② 절약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은 법인 설립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하며 지원조건은 5천만원 정액지원으로 년리 10%에 1년후 일시상환으로 한다.

제14조(공동투자자 자금지원) 절약기업이 위·수탁자와 투자비용을 공동부담할 때에는 절약기업의 비용 부담분에 대해서만 본 운용규정상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제15조(자금지원 절차) ① 절약기업이 창업자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 신청한다.

1. 기금융자추천 신청서
2. 전문기업 등록증 사본
3. 창업일자 증빙 서류

② 절약기업이 투자자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한다.

1. 기금융자추천 신청서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사업계획서
3. 시설투자 계약서 사본
4. 투자시설 배치도

5. 시설투자 견적서

6. 별도의 시공자가 있는 경우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시공업허가증 사본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용자추천심사위원회 심사 후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용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자금지원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자금지원의 재원별로 별도 정하는 지원지침 또는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금지원의 제한)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절약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신청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 제3조의 별표 여신금지부문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2. 신축하는 건물 및 공장에 대해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단, 투자대상시설자체의 신·증설은 제외)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절약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신규 또는 추가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절약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원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령 및 본 운용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기타지원) 동력자원부장관은 절약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리대상업체의 에너지사용실태 자료 등

정보제공

2.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관리진단사업의 사업수행자 지정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4.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지원
5. 정부주관의 에너지절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6. 절약기업의 홍보활동 지원
7.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5장 사후관리

제18조(영업실적 보고 등) 절약기업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매년 당해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별지 서식 제5호의 양식에 따라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실태검사)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법령 및 본 운용규정상의 의무이행여부, 투자시설의 관리상태, 에너지절감 실적 등에 대하여 실태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대장 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절약기업의 등록사항에 관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절약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82조에 의거한 본 운용 규정상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

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절약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절약기업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등록취소의 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청문절차)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회계처리) ① 절약기업은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수행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점업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수행에 대한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수 있도록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① 법 제82조에 의거한 본 운용규정

제19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법 제89조 제9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 제82조에 의거한 본 운용규정상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법 제90조 제5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법정보유장비별 최소구비 세부내역

No	법정 보유 장비	장비 TYPE	장비 수량	장비보유 수량별 측정범위	비고
1	금수 및 금유량계	연속 적산형	2	*금수량계 - 최소 1ℓ이하, 최대 100m ³ 이상 *금유량계 - 최소 0.1ℓ이하, 최대 1000ℓ이상	
2	가스 분석기		1	*CO ₂ : 0~15.7% *O ₂ : 0~20.9% *CO: 0~3500PPM이상	시약분석용 장비는 제외한다.
3	열대온도계		1	*0~1500°C 이상	온도 지시계 또는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4	표준온도계	분상식	1	*100, 200, 300°C	
5	표면온도계	디지털온도 지시형	1	*0°C 이하~1000°C 이상	
6	풍속계	디지털형	1	*측정풍속 1이하~40m/s 이상	
7	풍압계	수주식	1	*0~150mm Aq이상	
8	적외선 광온계	적외선	1	*최대 1000°C 이상	
9	메연측정기	링겔만식	1	*측정농도가 측정지에 나타나는것	
10	비중측정기		1	*비중 0.7이하~1.85이상	액체 비중 측정용
11	열류계	설비표면부착형	1	*0~700 KCAL/m ² 이상	
11	열류계	설비표면 부착형	1	*0.1초이하~1시간이상	
12	스톱워치	연속식	1	*0.1초이하~1시간이상	
13	수질분석기 증기압력계	무모든관식	1	*7kg/cm ² *15kg/cm ² *50kg/cm ²	지름 100mm 이상
14	수질분석기		1	*중고형용질 *PH	

No	법정보유 장비	장비 TYPE	장비 수량	장비보유 수량별 측정범위	비고
15	적산전력계		1	*전기이용농도 *경도 *산소농도 *측정범위: 0~9999KWH 이상 사용전류: 199A	CT, PT가 내장된 것으로 사용용 0점 소성이 되는것
16	절연저항 측정기		1	*시험전압 500V 이상	
17	교류전력 측정기		1	*삼상용 측정범위: 0~200kW이상 사용전류: 199A 이상 *단상용 측정범위: 0~200kW이상 사용전류: 199A 이상	측정된 측정값이 프린터 장치로 포함한다.
18	역류계		1	*측정범위: 지상0~지상0	
19	조도계		1	*0~20,000Lx이상	
20	회전계		1	*20~10000RPM이상	
21	계기용 전류 변성기		1	*변성범위 100/5 *변성범위 300/5 *변성범위 500/5	
22	계기용 전압 변성기		1	*변성범위 3.3kv/100v	
23	연성계	부르돈과식	1	*최저 76CM Hg	지름 100mm 이상
24	증기건도계 열화상장치	증기관에 직접부착형	1		일낙차 측정으로 표시되며 열리가
25	적외선 열화상장치	적외선	1		측정온도 구분이 작리므로 표시되며 결과가 프린터 또는 사진 재성이 되어야함
26	초음파 유량계	외부부착형	1	*측정유속 1이하~10m/s이상	
27	기압계		1		
28	직독식노점지 시계 (온습도 분석기)	디지털형	1	*온도: 0°C이하~50°C *습도: 최대 90% 이상	
29	가동효율 측정기		1	*전압600V이상, 전류 300A 이상	

No.	비정보유 장비	장비 TYPE	장비 수량	상비보유 수량별 측정범위	비고
30	표류전류 측정기		1	*측정범위 0~199A이상	
31	컴퓨터		1	*286급 이상	프린터 포함

- 비고 : 1. 장비별 측정범위에는 구입선택의 원활을 위해 허용공차 10%를 인정한다.
 2. 측정장비 1점에서 측정성능을 2점이상 만족할 경우는 측정장비 2점으로 갈음한다.
 3. 장비 TYPE에서 현지정 TYPE보다 결약업체 보유장비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보유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Ⅳ. '93년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자금지원계획

- 재 원 : 석유사업기금
- 지원금액 : 약 100억원

- 투자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에 필요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 용자비율 : 시설투자 소요자금 90% 이내
 - 이 자 율 : 연리 5%
 -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내
- 창업지원 : 기업설립일로부터 1년이내인 자로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창업체 필요한 소요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 용자취급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	①상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또는 명칭		④전화번호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등록번호			⑦등록년월일
⑧기술부문			
⑨재교부 신청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리 자 민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증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술 부문			
등록년월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리 자 민 부 장 관			인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에너지 대상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또는 병칭	④전화번호
	⑤주된영업소의소재지	
⑥기수부		
⑦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에너지위원회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직원부장관 귀하		
7비서류		수수료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지 이하 간다)의 이력서		없음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지 이하 간다)의 이력서		
3. 고고사상업의 고고사상업명세서		
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본(법인의 경우에 말린디)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지 이하 간다)의 이력서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지 이하 간다)의 이력서		

【별지 제5호 서식】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영업실적 보고서

()년도

1. 사업실적

○ 시설투자 부문

F209;09;

대상업체명	소재지	투자비(백만원)			투자기간 (투자 완료일)	투자효과 (년간 기대효과)		비고
		절약 기업 부담	타사 부담	계		절감량	절감액	
합계								

○ 비시설 투자부문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자금소요 계획서

○ 절약기업명 : (단위 : 백만원)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년간 에너지 절감량 (절감액)	투자회수 기간
			*자기 자금	기금 융자	타사 부담		
합계							평균

* 기금융자 이외의 차입자금 포함

